

일 러 두 기

■ 전체 일러두기

1. 본 통계는 2013년에 전국 각급 경찰관서에서 3종의 형사사건 범죄통계원표(발생·검거·피의자 통계원표)에 근거하여 전산 입력한 자료를 경찰청 수사국에서 집계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분석한 것이다.
2. 통계표 산출의 기본 단위는 건수와 인원으로 되어 있다. 단, <재산피해 및 회수상황>에서는 금액(만원)이 단위이기도 하다. 건수는 발생통계원표를 토대로 한 ‘발생건수’와 검거통계원표를 토대로 한 ‘검거건수’로 구분 된다. 인원은 발생원표에서의 ‘피해자인원’과 피의자통계원표에서의 ‘피의자인원’의 두 종류가 있다. ‘피해자인원’은 <신체피해 상황>의 상해 및 사망 인원에 국한된다. ‘피의자인원’은 피의자통계원표 중 사건송치가 완료된 법인포함 피의자이며, 범죄자특성 분석 시에는 비법인의 자연인 피의자 중 기소중지자와 성별불상자를 제외하여 분석하였다.
3. 범죄통계의 목적은 “범죄양상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치안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범죄통계의 분류에서 각 죄명의 분류는 “위반행위속성(범죄행위의 내용적 특징) 및 법익침해유형(범죄행위의 결과적 특징)”을 기준으로 한다.
 - 다만, 위반행위속성과 법익침해유형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범죄행위(위반행위속성)를 우선적 기준으로 하며(제1분류원칙), 범죄피해(법익침해유형)를 이차적 기준으로 한다(제2분류원칙). 이에 따라 「2010 범죄통계」 이전에는 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풍속범죄, 기타형법범죄 및 특별법범죄 등 7개 분야로 구분하던 것을, 「2011 범죄통계」 부터는 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풍속범죄, 특별경제범죄, 마약범죄, 보건범죄, 환경범죄, 교통범죄, 노동범죄, 안보범죄, 선거범죄, 병역범죄, 기타범죄의 15개 분야로 구분하였다. 세부적인 죄종은 범죄실태 파악 및 분석에 중요한 죄종을 추가로 제시하여 「2011 범죄통계」 377개, 「2012

범죄통계」 398개에서 「2013 범죄통계」에는 419개로 확대되었다.

- 특별법 위반 범죄는 기존에는 특별법명에 따라 163개로 단순 구분하였으나 「2011 범죄통계」부터는 위반행위속성과 법익침해유형에 따라 분류하되, 기존 형법범죄의 법정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형태의 특별법(형식적 특별법)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법범에 통합(예를 들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9조의 강간 등 살인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강간 등 살인’ 항목에 통합)하였고, 범죄구성요건을 신설하거나 제한하는 형태의 특별법(실질적 특별법)에 해당하는 범죄는 별도로 제시하였다. 주로 경제범죄, 마약범죄, 보건범죄, 환경범죄, 교통범죄, 안보범죄, 병역범죄가 이에 해당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위반은 폭력행위를 행사한 경우에는 폭력범죄 중 ‘폭력행위 등’이라는 항목으로 분류하였고, 이 법을 위반하되 폭력행위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처분 등에 관련된 경우에는 ‘기타’에 분류하였다. 또한 폭처법 위반 사례 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의 경우에는 지능범죄의 ‘직무유기’로 분류하였다.
- 「2010 범죄통계」 이전의 ‘강간’ 범죄는 「2011 범죄통계」와 「2012 범죄통계」에서 ‘강간·강제추행’ 범죄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2013 범죄통계」 이후로는 ‘강간·강제추행’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 강간·강제추행등’으로 세분화하였다. 이 때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은 현재의 통계시스템 상 강간인지 강제추행인지 구분할 수 없는 사례들만을 별도로 분류한 것이다. 네 가지 범주로 새로 분류한 성폭력 범죄는 형법 제32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내(관련 구법 포함)에서 재분류한 것이다. 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 조항을 위반한 경우와 2012년 12월에 신설된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의 경우에는 ‘성폭속범죄’로, 성매매 관련 위반행위는 ‘기타범죄’로 분류하였다.
- 살인범죄는 다른 범죄유형과 달리 기수와 미수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그 자체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현재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서 수집하는 각국 범죄통계 중 살인범죄(Homicide[Intentional Homicide])의 정의에 살인미수범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 죄명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은 ‘특경법’으로 약칭하였다.

- 「2012 범죄통계」 이전에는 지능범죄 중 ‘증수뢰’ 범주에 ‘특경법(알선수재)’, ‘특경법(수재등)’, ‘특경법(증재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3 범죄통계」 부터는 이를 ‘증수뢰’에서 제외하고 ‘배임’ 범주로 재분류하였다. ‘증수뢰’는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죄명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분류방식의 변화는 다음의 표로 요약해 볼 수 있다.

2010범죄통계(공동작업이전판본)		2012범죄통계(공동작업2년차)		2013범죄통계(공동3년차)		
소계 변화	기존 기준 <증수뢰> 소계	851	기존 기준 <증수뢰> 계	357	기존<증수뢰> 계	298
	2013년 기준 <증수뢰> 계 (특경법 제외시)	750	2013년 기준 <증수뢰> 계 (특경법 제외시)	319	2013기준 계 (특경법 제외시)	253
증수뢰	뇌물수수·요구·약속	510	뇌물수수·요구·약속	162	뇌물수수등	174
	특가법(뇌물)	50	특가법(뇌물)	26	특가법(뇌물)	29
	특가법(알선수재)	23	특가법(알선수재)	62	특가법(알선수재)	6
	특경법(수재등)	45	특경법(수재등)	16	‘배임’으로 재분류	
	특경법(알선수재)	25	특경법(알선수재)	20	‘배임’으로 재분류	
	뇌물공여·약속·의사표시	167	뇌물공여·약속·의사표시	69	뇌물공여등	44
	특경법(증재등)	31	특경법(증재등)	2	‘배임’으로 재분류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	-

2010범죄통계(공동작업이전판본)		2012범죄통계(공동작업2년차)		2013범죄통계(공동3년차)		
소계 변화	기존 기준 <배임> 계	14,264	기존 기준 <배임> 계	4,229	기존 <배임> 계	4,572
	2013년 기준 <배임> 계 (기존 증수뢰 일부 포함)	14,365	2013년 기준 <배임> 계 (기존 증수뢰 일부 포함)	4,269	2013기준 소계 (기존 증수뢰 일부 포함)	4,617
배임	배임	2,449	배임	1,741	배임	1,700
	특경법(배임)	5,939	특경법(배임)	392	특경법(배임)	387
	업무상배임	5,598	업무상배임	1,912	업무상배임	1,946
	배임수재	221	배임수재	147	배임수재	344
	배임증재	57	배임증재	37	배임증재	195
					특경법(알선수재)	24
					특경법(수재)	20
				특경법(증재)	1	

- 「2013 범죄통계」에서는 소분류명을 예전보다 간략화하였고, 독자가 보기 쉽고 일관성을 갖는 방향으로 소분류명의 순서를 변경하였다.
- 자세한 죄명분류는 부록의 <죄명분류표>에 별첨하였다.

4. 소년범죄자의 연령은 2008년부터 시행된 개정 소년법에 따라 19세미만으로, 고령범죄자의 연령은 65세이상으로 분류하였다.

■ 장별 일러두기

II. 범죄 발생·검거 및 처리

1.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중 ‘발생건수’
 - 한 해 동안에서 경찰에서 인지한 사건을 말한다.
 - 따라서, 검찰과 특별사법경찰에 의해서 인지된 사건은 제외되어 있다.
2.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중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건수를 같은 해 동안 검거한 사건수로 나눈 것이다.
 - 「2010 범죄통계」까지는 ‘검거율’, 「2011 범죄통계」부터는 ‘발생건수 대비 검거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2012 범죄통계」부터는 보다 정확한 표현을 위해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로 수정하였다.
3.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의 지역별 통계는 지방경찰청별 통계이다.
4.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중 ‘검거인원’ 성별분류항목에서의 ‘불상’
 -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으로서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검거원표는 작성하지 않으나 피의자원표는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다른 자료에 의하여 작성 가능한 항목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피의자의 성별이 ‘불상’인 경우가 발생한다.
5. <검거자> 중 ‘미상’
 - 기소로 송치의견을 작성하는 경우에만 필수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불기소 및 기타의 경우에는 미입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미상’으로 명명하였다.
6. <범죄자 송치의견> 중 ‘사안송치’
 - 대통령령 78조(송치지휘 등)에 의해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중단하고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Ⅲ. 범죄발생상황 관련 특성

1. <범죄 발생시간> 중 '미상'
 - 발생시간을 모르는 경우를 의미한다.
2. <범죄의 발생지> 항목 분류 방식
 - 범죄의 발생지 항목은 총 55개로 구분되어 있다. 이는 크게 서울특별시(1지역) 및 광역시(6지역), 특별시와 광역시 외의 주요 도시(도시이름이 명기된 46지역)과 '기타도시', '도시이외' 지역으로 구분된다.
 - 특별시와 광역시 외의 주요도시(부천에서 논산까지)와 '기타도시'는 행정구역상 시(市) 지역을 의미한다.
 - '도시이외' 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와 행정구역상 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의미한다.

Ⅳ. 범죄자 특성

1. 범죄자특성에 관한 분석시 성별불상자 및 기소중지자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2011 범죄통계」까지는 기소중지자를 포함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도별 비교시 주의를 요한다.
2. <범죄자 범행시 연령> 중 '14세미만' 집계
 - 소년범죄자 처리규정 상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피의자원표를 작성하지 않으나 이러한 원칙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아 촉법소년의 일부만 집계되었다. 따라서 이 통계만으로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3. <범죄자 범행시 성별 연령> 중 '미상'
 - 범죄자의 성별은 구분이 가능하나, 연령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4. <범죄자 생활정도, 혼인관계 및 부모관계> 항목 분류 방식
 - 범죄자를 큰 분류에서 기혼자, 미혼자, 미상으로 구분하였다.

- 기혼자는 다시 '유배우자', '동거', '이혼', '사별'로 구분하였다.
- 미혼자는 부모관계별로 '실부모', '계부모', '실부계모', '실부무모', '실모계부', '실모무부', '계부무모', '계모무부', '무부모'로 구분하였다.

5. <범죄자 범행시 성별 정신상태> 항목 분류 방식 및 '미상'

- 「2011 범죄통계」까지는 각 정신상태 항목별로 남녀를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나, 「2012 범죄통계」는 남녀를 먼저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정신상태를 제시하였다.
- 「2011 범죄통계」까지는 범죄자의 정신상태에 미입력된 경우를 '정상'으로 집계하였으나, 「2012 범죄통계」부터는 '미상'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연도별 비교시 주의를 요한다.

6. <범죄자 국적> 항목 분류 방식

- 현행 통계 입력과정에서는 범죄자가 외국인 경우 반드시 국적을 입력하지만, 한국인이거나 국적을 모르는 경우 입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때 실제로 국적을 모르는 경우에 미입력한 사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고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미입력된 사례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미입력 항목을 '한국' 국적으로 집계하였다.
- 「2011 범죄통계」까지는 전체범죄자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각 국적별 구성비율을 제시하였으나, 「2012 범죄통계」부터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국적별 구성비율을 제시하였다.

7. <범죄자 전과 여부 및 횟수> 중 전과의 개념 및 '미상'

- 전과란 형사사건으로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구류형, 과료형, 보호처분, 기소유예, 공소보류, 기소중지처분 등은 전과에서 제외되어 있다.
- 기소로 송치의견을 작성하는 경우에만 범죄자의 전과를 필수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불기소 및 기타의 경우에는 미입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2012 범죄통계」 이후로는 이를 '미상'으로 분류하였다. 참고로, 「2011 범죄통계」 이전에는 미입력된 부분이 '없음'에 포함하여 집계되어 왔으므로 연도별 비교시 주의를 요한다.

8. <범죄자 범행시 전회처분 종류> 중 전회처분 개념 및 '미상'

- 전회처분이란 본사건 직전의 처분내용 또는 그 집행상황을 의미한다. 범죄자에게 진행 중인 직전 형사처분의 집행상황(수배중, 집행유예중, 보석·형집행정지중), 진행 중인 처분이 없을 경우엔 과거에 받은 처분내용 중 가장 최근의 형사적 처분내용(즉결심판, 기소유예, 선고유예, 보호처분, 선고유예, 가석방, 형집행정료, 감호소출소 등)이 포함된다. 전회처분은 전과(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전과에 미치지 못하는 형사처분(기소유예, 보호처분 등)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 범행시 전회처분은 송치의견이 기소인 경우에만 필수입력사항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불기소시에는 미입력 되기도 한다. 미입력 된 경우 「2011 범죄통계」이전까지는 '없음'에 포함하여 집계하였으나, 「2012 범죄통계」부터는 '미상'으로 분류하였다.

9. <범죄자 재범종류 및 기간> 중 재범의 개념

- 본서에서의 '재범'이란 본건 이전의 직전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 또는 재판계속중이거나 구류형, 과료형, 보호처분, 기소유예, 공소보류, 기소중지 처분된 경우도 모두 포함하여 집계한 것이다.
- '전과'가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만을 집계하는 것인 반면, '재범'은 위와 같은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기 때문에, 전과가 있는 범죄자 수와 재범자의 수는 일치하지 않는다.

10. <범죄자 공범관계> 중 '미상'

- 「2011 범죄통계」까지는 공범관계가 미입력된 경우 '단독범'에 포함시켜 집계하였으나 「2012 범죄통계」부터는 '미상'으로 분류하였다.

V. 피해자 특성

1. <피해자 성별 연령> 주의 사항 및 '미상', '불상'

-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에 주된 피해자에 관하여만 입력하였다.
- '미상'은 연령 미상이고, '불상'은 성별 불상이다. 성별불상은 성별을 모르거나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이다.

IV. 범죄자 유형

1. “IV범죄자 특성의 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범죄자 유형별 특성 분석시 성별 불상자 및 기소중지자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2011 범죄통계」까지는 기소중지자를 포함하였기 때문에 연도별 비교시 주의를 요한다.
2. <공무원범죄자 소속기관> 중 ‘해양수산부’
「2011 범죄통계」와 「2012 범죄통계」에서는 <공무원범죄자 소속기관>의 ‘국가공무원’ 범주 내에 ‘해양수산부’ 항목을 제외하였으나, 「2013 범죄통계」부터는 ‘해양수산부’ 항목을 다시 추가하였다.